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정책보험으로 제명 변경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53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추가	3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7
나. 검토의견	17
1) 수입안정보험의 개요 등	17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
2. 정부의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의무 신설 등	28
3. 재해보험 등 업무 수탁자의 정책보험사업자에 대한 보고 등 요구 근거 마련	30
4. 부칙: 시행일 및 다른 법률의 개정	3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10. 30.
3. 회 부 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Ⅲ.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
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
제2호 등).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
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
항제1의3호 신설).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
의3).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
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
항).

IV. 검토의견

1.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추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명으로 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제명인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에 농업·어업재해보험 외에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u>농어업재해보험법</u>	<u>농어업정책보험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u>피해</u> 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u>농어업재해보험</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피해</u> <u>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u> ----- <u>농어업정책보험</u>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농어업정책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 ----- 따른 손해 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 ----- ----- -----.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6. ----- 농어업정책보험사업 (이하 “정책보험사업”----- ----- ----- ----- -----.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현행	개정안
·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어업재해보험</u>(이하 “<u>재해보험</u>”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u>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u>(이하 “<u>기본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재해보험사업</u>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u>재해보험</u>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u>재해보험</u>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u>재해보험</u>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u>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u>(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시행) ① ----- ----- <u>농어업정책보험</u>(이하 “<u>정책보험</u>”----- -----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 ----- <u>정책보험 발전</u> ----- ----- -----. ② ----- -----. 1. <u>정책보험사업</u>----- ----- 2. <u>정책보험</u>----- ----- 3. <u>정책보험</u>----- ----- 4. <u>정책보험사업</u>----- ----- 5. ----- <u>정책보험</u> ----- ----- ----- ----- ③ ----- ----- <u>정책보험</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3(정책보험 등의 심의) 정책보험 및 농어업정책재보험----- ----- ----- 농업정책보험심의회 ----- ----- -----.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정책보험----- -----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보험사업-----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정책재보험사업-----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농업정책보험심의회----- ----- ----- ----- 정책보험 및 ----- -----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농업정책보험심의회) ① 정책보험(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은 제외한다) 및 ----- ----- 농업정책보험심의회----- -----.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재해보험</u>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u>정책보험</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 -----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재해보험</u> 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 <u>정책보험</u> ----- -----
2. 농림축산식품부의 <u>재해보험</u> 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 <u>정책보험</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⑤ ⑥ (생략)	⑤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u> 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 <u>정책보험</u>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2장 <u>재해보험사업</u>	제2장 <u>정책보험사업</u>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u>임산물재해보</u>	제4조(정책보험의 종류 등) <u>정책보험</u> 의 ----- <u>임산물재해보</u>

현행	개정안
협,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u>임산물재해보험</u>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② (생략)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u>재해보험</u>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 <u>농업수입안정보험</u>----- -----. <u>임산물재해보험</u>, <u>농업수입안정보험</u> - ----- -----. 제5조(보험목적물) ① ----- ----- ----- -----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u>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정책보험</u>에서 ----- ----- <u>정책보험</u>의 - -----. ② ----- <u>정책보험</u>----- -----.

현행	개정안
제7조(보험가입자) <u>재해보험</u> 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험가입자) <u>정책보험</u> ----- ----- ----- -----.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재해보험사업</u> 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사업</u> 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해보험사업</u> 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 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정책보험사업</u> --- -----. 2. ~ 3. (현행과 같음) ② ----- <u>정책보험사업</u> 을 --- ----- ----- <u>정책보험사업</u> 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정책보험사업</u> ----- -----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해보험사업</u> 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 <u>재해보험사업자</u> ”라 한다)는 <u>재해보험</u> 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u>재해보험사업자</u> 는 보험약관안과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 ----- ----- <u>정책보험사업</u> 의 --- ----- “ <u>정책보험사업자</u> ” <u>라 한다</u>)는 <u>정책보험</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자</u> -----

현행	개정안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모집) ① <u>재해보험</u>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의</u>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u>재해보험 안내자료</u>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u>재해보험사업자</u>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략)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 ----- ----- -----. 제10조(보험모집) ① <u>정책보험</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u>정책보험의</u> ----- ----- <u>정책보험 안내자료</u>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자</u>----- ----- -----.

현행	개정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재해보험사업</u> 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정책보험사업</u> 자-----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해보험사업자</u> 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u>정책보험사업자</u> -----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u>농작물재해보험</u>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 ---- <u>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u>재해보험사업자</u> 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u>정책보험사업자</u> ----- ----- -----

현행	개정안
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u>재해보험사업자에게</u>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u>재해보험사업자는</u>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재해보험의</u>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재해보험가입자가</u> <u>재해보험에</u>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u>재해보험계약</u>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업무 위탁) <u>재해보험사업자는</u> <u>재해보험사업</u>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 <u>정책보험사업자에게</u> ----- ----- <u>정책보험사업자는</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정책보험</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정책보험가입자가</u> <u>정책보험</u>----- ----- <u>정책보험계약</u>----- -----. 제14조(업무 위탁) <u>정책보험사업자는</u> <u>정책보험사업</u>-----

현행	개정안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u>재해보험 업무</u>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구분) <u>재해보험사업자</u>는 <u>재해보험사업</u>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u>재해보험</u>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u>재해보험가입자</u>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u>재해보험사업자의</u>	----- ----- <u>정책보험 업무</u>----- ----- --- 제15조(회계 구분) <u>정책보험사업자</u>는 <u>정책보험사업</u>----- ----- -----. 제17조(분쟁조정) <u>정책보험</u>----- ----- ----- -----.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 ----- <u>정책보험사업</u>----- ----- ----- ----- ----- -----. -----. ② ----- <u>정책보험사업</u>----- ----- -----. ----- 제19조(재정지원) ① ----- ---- <u>정책보험가입자</u>----- ----- <u>정책보험사업자의 정</u>

현행	개정안
<u>재해보험의</u>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재해보험가입자</u>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u>재해보험사업자</u>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u>재해보험에 가입할</u>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3장 <u>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u>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u>재보험</u>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u>재해보험사업자</u>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u>재해보험사업자</u>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u>책보험</u> ----- ----- -----. ----- <u>정책</u> <u>보험가입자</u>----- -----. ② ----- ----- ----- <u>정책보험사업자</u>----- -----. ③ ----- ----- ----- -- <u>정책보험에 가입할</u> ----- -----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u>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u> 제20조(재보험사업) ① ---- <u>정책보험</u>----- -----. ② ----- ----- <u>정책</u> <u>보험사업자</u>----- ----- -----. 1. <u>정책보험사업자</u>----- ----- -----

현행	개정안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u>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설치) ----- ----- ----- ----- <u>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u> ----- --.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농어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사업</u>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 ----- <u>정책보험사업</u> ----- -----.
1. <u>재해보험사업</u> 의 관리·감독	1. <u>정책보험사업</u> -----
2. <u>재해보험</u> 상품의 연구 및 보급	2. <u>정책보험</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 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2. ----- <u>정책보험사업</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재해보험사업</u> 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4. ----- <u>정책보험사업</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② (생략)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사업</u>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u>재해보험 제도</u>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u>재해보험</u>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u>재해보험사업자</u>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u>재해보험사업자</u>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u>재해보험사업자</u>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u>정책보험사업</u>----- ----- <u>정책보험 제도</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 <u>정책보험</u>----- ----- ----- -----.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u>정책보험사업자</u>는 <u>정책보험</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u>정책보험사업자</u>----- ----- ----- ----- -----. ② <u>정책보험사업자</u>-----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 내를 한 자로서 <u>재해보험사업자</u> 가 아닌 자	1. ----- ----- ----- <u>정책보험사업자</u>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공고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1) 수입안정보험의 개요 등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① 농작물, ② 임산물, ③ 양식수산물, ④ 가축과 ⑤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재해보험의 종류를 ① 농작물재해보험, ② 임산물재해보험,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 ④ 가축재해보험으로 열거¹⁾하고 있음.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²⁾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① 농작물(임산물 포함)재해보험, ② 가축재해보험, ③ 가축질병치료보험, ④ 수입안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보험에는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2024년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6,571억 400만원임.

[농업재해보험 사업 개요]

연번	구분	예산(백만원)	내용
1	농작물 재해보험	535,584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임산물 포함)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2	가축 재해보험	112,220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50% 지원
3	가축질병 치료보험	1,200	가축질병 치료비 및 예찰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영업보험료의 50% 지원
4	농업수입 안정보험	8,100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 감소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으로 순보험료 50% 지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이중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분’도 보장해주는 사업임.

우리나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개별 품목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미국식 수입보험(Revenue Protection)과 유사하고, 농가 전체 단위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일본식 농업경영수입보험과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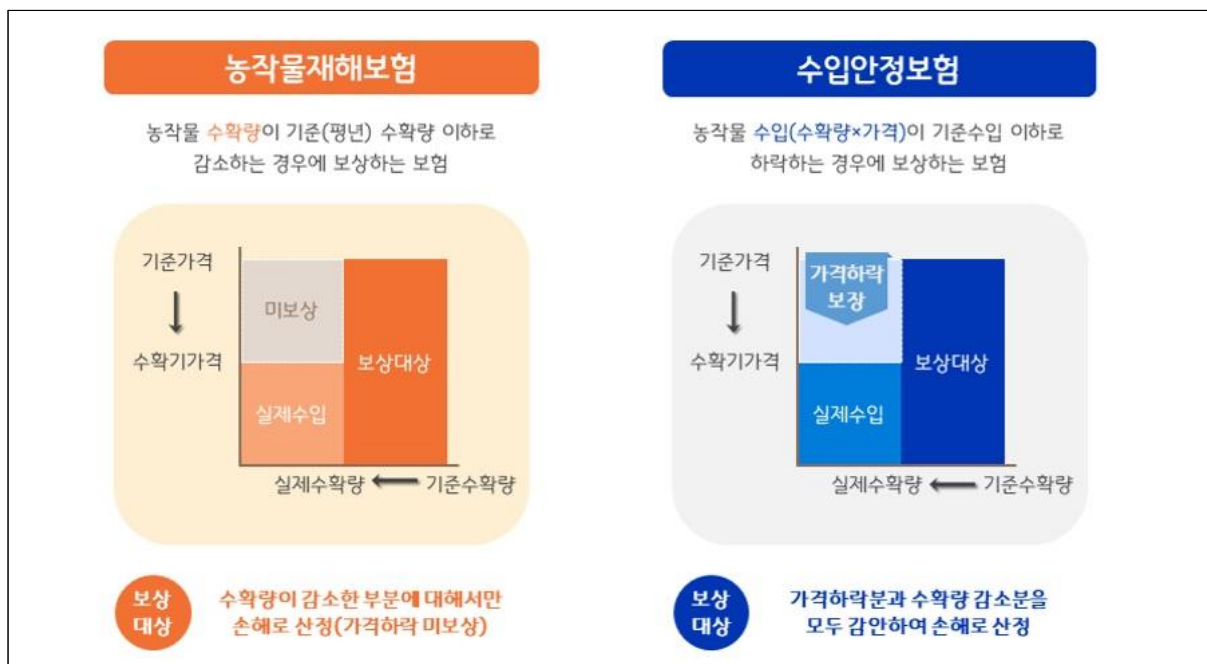
[해외 수입안정보험 비교]

구분	우리나라 수입안정보험	미국 수입보험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명칭)	농업수입안정보험	Revenue Protection	農業經營收入保險
근거법률	농업정책보험법	Farm Bill	農業保險法
배경·목적	▶ 수입 개방에 대응 (보상)	▶ 새로운 가격위험완화 장치 필요 ▶ 식량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뒷받침	▶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인에 대한 경영위험 완화 지원
도입시기	2015년	2011년 * 수입 보장형 보험 상품은 1996년 최초 도입, 현행 RP 상품은 2011년 도입	2019년
가입 단위	▶ 농지(개별 품목)	▶ 농지(개별 품목)	▶ 농가(전 품목)
대상 품목	▶ 9개(콩, 고구마, 가을 감자, 포도, 마늘, 양파, 양배추, 보리, 옥수수)	▶ 15개(옥수수, 대두, 밀, 수수, 보리, 목화, 땅콩, 해바라기, 쌀, 건완두콩, 카놀라, 건콩, 팥 등)	▶ 농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비육우, 비육돈, 계란 제외)
보상 대상	▶ 자연재해에 따른 개별 품목 수량 감소 및 가격하락(각각 보상)	▶ 수량 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개별 품목 수입 손실	▶ 수량 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전체 수입 손실
보장수준 (보조율)	▶ 60~80%(50%)	▶ 50~85%(67~38%)	▶ 보험방식 50~80%(50%)
가입률	3.3%('23) * 가입면적/대상면적	- (미발표)	24.6% * 가입자/대상자
주도	제도 운영: 국가 상품설계·운영: 민간	제도 운영·상품설계: 국가 상품운영: 민간	제도 운영: 국가 상품설계·운영: 민간
상품운영	민간보험사(1개소)	민간보험사(13개소, '23)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보험가입 전제조건	▶ 경영체 등록	-	▶ 과거 수입 입증하는 세금신고(청색신고) 1년 이상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11.25)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품목별 수입 감소를 모두 보상한다는 점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만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차이가 있음.

[농업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비교(그림)]



※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제출자료('24.12.4)

현재 수확량 감소는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 수량 대비 일정 수준 이하(60~90%)로 감소하면 감소분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수입 감소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수입(과거 5년간의 수확량과 시장가격으로 산출)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0%)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농업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비교(표)]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시범사업 9개('24) → 시범사업 6개, 본사업 9개('25)	73개('24) → 76개('25)
보상기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량 감소: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체 보상	좌동
	-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체 보상
보장수준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정부지원	순보험료의 50% * 지자체에서 평균 30~40% 지원, 농가는 10~20% 부담 중	순보험료의 50% * 지자체에서 평균 30~40% 지원, 농가는 10~20% 부담 중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10.4)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9개 품목에 대하여 일부 지역(품목별 주산지)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시범사업³⁾을 수행해 왔음.

동 사업은 수입안정보험 가입 농가에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0~4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가입률은 3.3%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9개의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6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⁵⁾임.

3)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상세내용은 참고자료1 참조

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입률의 산출식은 '가입면적/대상면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함.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조사한 농가의 품목별 ‘수확량’에 대표성·객관성 등을 갖춘 ‘기준가격’을 곱해 기준수입과 당해수입을 산정⁶⁾하고,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의 상품(① 과거수입형, ② 기대수입형, ③ 실수입형)⁷⁾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기준가격은 ① 과거수입형과 ② 기대수입형은 지수가격(도매시장가격 등)을, ③ 실수입형은 실제 농가수취가격(계약재배가격 등)을 활용하게 됨.

농가는 가입 시 보장 수준(60~80%)을 선택할 수 있으며, 85% 보장 상품은 수급정책참여, 전 필지 가입 등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5) ▶ 본사업: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 시범사업: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6) ▶ 기준수입 =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기준가격(과거 5년 올림픽평균 수확기가격)

▶ 당해수입 = 당해연도 수확량 × 당해연도 수확기가격

7) ① 과거수입형: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으로 적용

② 기대수입형: 수확기가격 상승시 기준가격에 반영

③ 실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외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분’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보상의 범위가 이 법에 규정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보다 확대 적용되고 있음.

농식품부는 현행법 제27조⁸⁾의 시범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업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음.

다만, 시범사업 역시 농업재해보험의 범위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한정⁹⁾된다는 점에서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시범사업 근거 규정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함.

또한,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9개의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6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2024년 81억원에서 2025년 2,078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농가소득 파악 등 기반구축 미흡,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법적 근거 미비 등 본

8)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2조(정의) 1~5. (생략)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1,119억원 감액하고 해당 감액분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24.12.10)된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그 밖에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국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서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음.

[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지적]

구분	내용
2025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 (2021) 일부 <u>내역사업의 법률적 근거 부족</u> , 사업 실적 부진, 부정 수급 관리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2024) <u>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u> , 보험계약의 정확성 관리 등 필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분석)보고서	○ (예결위)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u>별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u> 필요 ○ (예산처) 수입안정보험의 운영에 관한 <u>법적 근거 마련</u> 필요 ○ (상임위)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u>법적 근거 명확화</u> 필요

개정안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제명을 변경(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정책보험법)함으로써 이 법상의 보험이 농업수입안정보험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한 것은 ‘재해’에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손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보험은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되 실제 운영은 민간보험사를 활용하는 보험으로 수입안정보험을 포괄할 수 있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본사업으로의 전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본사업 수행은 물론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2조(정의조항)의 농업수입안정보험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수입(收入)’의 경우 다른 의미의 수입(輸入)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자를 명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 보험에 대하여 미국은 수입보험(Revenue Protection), 일본은 농가경영안정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상 대상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나, ‘시장가격’과 ‘수입’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시장가격 변동과 수입 감소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구별되는 수입안정보험만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도매시장가격인지, 산지출하가격인지, 소매가격인지 불분명하고 수입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함.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부터 운영할 예정인 수입안정보험상품의 경우 수입 산출 방식이 3가지(① 과거수입형, ② 기대수입형, ③ 실수입형)이고 수입 산출 시 적용하는 시장가격 역시 품목별로, 품목 내에서도 품종이나 용도별로 상이¹⁰⁾하므로, 이를 모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시장가격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셋째,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농작물 및 임산물’로 한정되고 가축,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은 제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목적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가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용역을 거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수요 제기가 없기에 각각 보험목적물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임¹¹⁾. 시설물은 시장가

10) 고구마는 밤과 호박고구마로 나뉘어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쓰고, 콩의 경우 백태는 양곡도매시장 가격을, 나물용은 지역농협 구매가격을 쓰고 있으며, 마늘의 경우 도매시장에서는 깎 마늘만 유통되고 있어서 지역농협 구매가격을 사용함.

1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은 해외사례 분석 및 상품설계 가능성, 역선택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고, 해양수산부는 어업 현장에서는 수입

격 변동에 따른 수입 감소와는 무관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도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 보상은 농작물과 임산물에 한정되도록 목적 조항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현행법 및 개정안 규정에 따른 보험 목적물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보험 명칭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정책’보험
농어업 <u>재해</u>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	① 농작물, ② 임산물 ③ 양식수산물, ④ 가축 ⑤ 농어업용시설물	좌동
<u>시장가격 변동</u> 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보상	-	① 농작물, ② 임산물

안정보험에 대한 수요 제기가 없어 기존 보험의 내실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견임.

2. 정부의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의무 신설 등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에 농식품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두는 것 외에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7조(시범사업) <신설>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책보험사업자----- ----- ----- -----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하여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부가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시범사업의 결정 주체와 시행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임.

즉, 현행법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NH손해보험)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 농식품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도 시범사업 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운영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정책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재해보험 등 업무 수탁자의 정책보험사업자에 대한 보고 등 요구 근거 마련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 등이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정책보험사업자의 업무 처리 상황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제29조(보고 등) ① ----- 정책보험의 ----- 정책보험가입자----- -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 -----. ② 제20조,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책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은 재해보험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제20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은 각각 농식품부장관 등이 재보험사업 업무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5조의2제3항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가능함.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도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업무를 지역농협 등과 손해사정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업무 위탁 관련 규정]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¹²⁾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재보험사업 및 정책보험사업 업무(농금원) 또는 손해평가 자격시험 관련 업무(한국산업인력공단)를 위탁받은 자에게, 정책보험사업자(NH손해보험)에 대하여 정책보험사업에 관한 사항 및 정책보험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위탁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정책보험사업 업무 수탁자 등에게 정책보험사업자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보험사업자 관리·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부칙: 시행일 및 다른 법률의 개정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9,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제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각각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한다. 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한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일부 개정규정(제11조의9,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의 경우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단서조항의 일부 개정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은 법률 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법률의 제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정리하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 부칙에 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5개의 법률 외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인용¹³⁾하고 있음에도 부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5

-
-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참고 1

수입안정보험 상세내용

< 농업수입안정보험 개요 및 운영 현황 >

- (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4년 9개 품목
 -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 지자체에서 30~40% 지원,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20%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가격하락 등
- (소요예산) '24년 81억원
- (가입실적) '15~'23년 동안 총 15,895ha, 17,838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233ha, 1,652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3년 동안 총 12,511 농가에 보험금 891억원 지급, 수입 감소 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보험금)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346 농가에 보험금 58.6억원 지급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23년 손해율은 150.9%, '23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138.8% 기록
 - * ('18) 103.2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 농업수입안정보험 향후 추진방향>

- (대상품목) 주요 농산물 대상 '25년부터 전국 본격 시행 및 단계적 확대
 -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25년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24: 81억원, 시범 6 → '25: 2,078, 본사업 9, 시범 6)
 - * 농림업 생산액(축산업 제외)의 80%, 총 경지면적의 75%, 등록 경영체의 65% 차지
 - * '25년 본사업 품목('24년 시범사업 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 '25년 시범사업 품목(중복 제외) :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봄·고랭지)
 - 쌀 등 신규 도입 품목은 1~2년간 일부 주산지 대상으로 운영 후 전국 사업으로 전환(쌀 : '25~'26년 시범사업 → '27년 본사업)
 - 채소가격안정제(7개 품목)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통합하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병행 지원
 - 축산물은 해외사례 분석 및 상품설계 가능성, 역선택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25)을 거쳐 도입 여부 결정(축산국)

□ (보장수준) 품목별 수입 감소 시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

- 보험사에서 조사한 농가의 품목별 '수확량'에 대표성·객관성 등을 갖춘 '기준가격'을 곱해 기준수입과 당해수입 산정
 - ▶ 기준수입 =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기준가격(과거 5년 올림픽평균 수확기가격)
 - ▶ 당해수입 = 당해연도 수확량 × 당해연도 수확기가격
-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 도입 후 다양화*
 - * 작형·품종별 상품 세분화, 실수입 보장상품, 농가단위 농업수입 보장상품 확대 등
 - ① [과거수입형]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으로 적용
 - ② [기대수입형] 수확기가격 상승시 기준가격에 반영
 - ③ [실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0%) 선택하도록 하되, **高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 * 수급 정책 참여 농가, 전 필지 가입 농가 등
- 가격(기준·당해가격)은 ①과거·②기대수입형은 **지수가격**(도매시장가격 등), ③실수입형은 **실제 농가수취가격**(계약재배가격 등) 활용

□ (자기책임 강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한 보험 실효성 제고

-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및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高손해율** 농가·지역 대상으로는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
-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순보험료의 50%)하되, 보장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원 상한(5천만원/호) 설정
 - * 보장수준별 보조율(안): 80% 보장상품/50% 정부 지원, 70/60, 60/60
- 농가별 보험료 최소 부담기준 설정 및 최소 가입기준 상향*
 - * 예: (최소 부담기준) 순보험료의 15% / (최소 가입기준) 200만원 → 500

□ (추진체계 구축) 농가별 자료 수집·검증체계 및 통계 구축하고, 전담기관 운영

- 농가별 수확량의 '농가 신고-검증(농금원·보험사) 시스템' 도입('26)
 - * 수확량 통계, 해당 지역 정보, 농가 신고 수치 간 일차 검증 후 특이 농가 대상 현장실사
- 농가별 경영정보(수확량, 수입 등) DB를 구축해 신상품 설계 등에 활용
- **농금원 인력 보강**('25, +5명) 및 '(가칭)농업정책보험공사'로 전환 검토('27~)
-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
 - * (교육) 기존 교육과정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25) → 지역대학, 단체 등 통해 교육('26~)
 - (컨설팅)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희망 농가 대상 맞춤형 컨설팅

□ (수급 연계) 품목별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상품 설계 및 사업 관리

- 보험료 지원 면적한도 설정(품목별 평년 재배면적 또는 적정면적), 자조금 납부, 경작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
-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밥쌀 공급 감축(장립종 등 신품종 재배단지 등) 등 정부 정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85% 보장상품)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11.25)